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8 선고 2020나11429(본소), 2020나11436(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8 선고 2020나11429(본소), 2020나11436(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합5465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변론 종결2020. 12. 3.

판결 선고2021. 1. 28.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합54657(본소), 2019가합568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6,181,256원 및 이에 대한 2019. 2.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55,696,7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15,052,312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의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를 "주장하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 2016. 9. 2. 체결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서 입주지정예정일을 2018. 9. 30.로 정하면서 원고는 '2018. 9. 30. 이전에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업무협약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될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완공일은 달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협약서에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위 주장은 1의 확인서(갑 제28호증) 기재에도 반하는 주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2018.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착공일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9. 2. 착공하였으므로 2016. 9. 2.부터 공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27.자 반소장에서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9. 8. 6.자 답변서에서 "원고는 2016. 5. 1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29.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7. 29.이 착공일임을 전제로 공사기간을 계산하여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5.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각 서면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6. 7. 29. 착공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착공일에 관한 자백이 인정된다면 이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2호증, 을 제16,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지연에 피고의 책임이 있고 피고가 공사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체일 1일당 계약액의 1,000분의 1로 정한 지체상금을 자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22.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납입하였고 그 이자 중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구

판사이재환

판사전경욱